

충청북도화재예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구조와 관리의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임시저장취급소, 법 제16조제2항의 농예용 또는 어폐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등의 저장취급기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발령중 불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

제1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

제2조(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 ①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 반응등에 의하여 열을 발생하는 것(이하 “열발생장치”라 한다)으로써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상층부나 주위에 가연물이 접촉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 위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6. 충격, 진동등으로 쉽게 넘어지거나 균열 또는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개방로 및 가연성고체 또는 액체를 끓이는 화덕은 그 윗부분에 불연성덮개를 설치하고 배기통을 옥외로 통하여도록 설치하며 불티가 튀거나

불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한 차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센티미터이상의 턱을 쌓아야 한다.

10. 난방용 열풍로는 열 이동 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열풍로에 부속된 풍도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풍도 및 그 피복과 불박이틀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로(爐)에 근접된 풍도의 부분에 열풍조절장치(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로로부터 가목의 열풍조절장치까지의 부분과 그로부터 2미터이내의 부분은 가연물과 15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구는 오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목재, 석탄 그 밖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발생장치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재처리 설비를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낮은 면에 통기설비를 하여 재처리 설비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경유, 종유 그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 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연료탱크는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연료탱크는 벼너로부터 2미터이상의 수평거리를 보유하거나 방화
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온도가 현저하게 상
승할 우려가 없는 연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연료탱크는 두께 1.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라. 연료탱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 천정, 벽을 불연재료
로 만들어야 한다.
 - 마. 연료탱크의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바. 연료탱크에는 긴급할때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
브를 탱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한 연
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연료탱크 또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연료를 예열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연료탱크 또는 배관을 직접 가
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과도한 예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14. 경유, 중유 그밖의 액체연료 또는 프로판가스, 석탄가스, 그밖의 기체연
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에는 타다남은 가스가 체
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연소장치, 연료탱크등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연료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
는 금속관 이외의 관을 사용할 수 있다.

15. 전기를 열원으로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전선, 접속기구등은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과도한 온도상승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불안전한 곳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연료의 성질상 이상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4. 연료탱크 또는 연료용기는 차광, 충격,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간당 용량 300,000킬로칼로리이상의 열발생장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하고 창 및 출입구등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로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주방설비) ①조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렌지, 화덕등 설비(이하 "주방설비"라 한다)의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이하 "배기닥트등"이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배기닥트등은 내식성을 갖는 강판 또는 그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

를 갖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기닥트등의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기닥트등은 가연성의 물질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기닥트는 충분하게 배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배기닥트는 직접 옥외로 통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용도의 닥트 등과 접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배기닥트는 가능한 한 구부러진 부분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름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주방설비의 후드는 다음 각목에 의 한다.

가. 후드에 부착된 기름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여과기와 그리스추출기 등의 장치(이하 "그리스제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기닥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옥외로 배기하는 후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스제거장치는 잘 부식되지 않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를 갖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방설비의 규모 및 사용상황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닥트에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방화댐퍼 또는 자동식 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화염전파방지장치"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기 닉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옥외로 배출하는 후드의 경우 또는 배기 닉트의 길이나 해당 주방설비의 규모 및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드, 그리스체거장치 및 화염전파방지장치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후드 및 후드와 접속하는 배기 닉트내의 유지 등을 청소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주방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조제3항의 규정중 용량은 '해당 주방설비의 용량과 동일 주방설내에 설치한 다른 주방설비의 용량의 합계'로 한다.

제4조(보일러) ① 보일러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기관은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 및 이들에 접촉하는 부분을 규조토, 석면등 단열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2. 인화성의 열매(熱媒)를 사용하는 보일러에는 각 부분을 열매 또는 그 증기가 새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하고 열매 또는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것이외에 보일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외한다.

제5조(난로) ① 난로(이동식의 것은 제외한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난로의 연통 설비는 다음에 의한다.

가. 연통의 재질은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구조에 적합한 철물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연통의 옥상 돌출부에는 지붕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의 수직거리 를 두어야 한다.

다. 연통의 높이는 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마로부터 0.6미터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라. 지붕속과 반자속 사이를 지나는 금속제 연통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하여야 한다.

마. 금속제 또는 석면제의 연통은 목제 그밖의 가연재료로부터 0.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두께가 0.1미터이상의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하거나 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하여야 한다.

2. 목재연료, 석탄 그 밖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는 불연재료로 만든 재처리 설비를 부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이외에 난로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

③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홍음식점, 지하의 식품점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벽난로) ①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후면 또는 옆면과의 사이는 0.1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은 제5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건조설비) ①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조물품이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실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많은 건조설비에는 비상경보장치 또는 열원의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건조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8조(사우나설비) ①사우나설비에 설치하는 방열설비에는 온도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 및 자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 규정한 것이외에 사우나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8호 내지 제9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

제9조(간이온수설비) ①간이온수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반자 또는 선반등의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0.6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들의 부분으로부터 0.15미터이상 떨어진 불연성의 뚜껑 및 옥외로 통하는 배연통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 기둥등의 가연성 부분에 부설할 경우에는 간이 온수설비와 부설한 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간이 온수설비로부터 0.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벽, 기둥등의 가연성 부분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것이외에 간이 온수설비의 위치, 구조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변전설비) ①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최대출력 20킬로와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물이 새거나 스며들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또는 부식성의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설비(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조를 갖는 큐비클식의 것을 제외한다)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구획된 실내에 설치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변전설비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큐비클식에서는 환기, 점검 및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등과 다음 각호의 기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 전면 또는 조작면 : 1.0미터이상

- 나. 점검면 : 0.6미터이상
 - 다. 환기면(전면, 조작면 또는 점검면 이외의 면으로 환기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 0.2미터이상
5. 제3호의 벽등을 닥트, 케이블등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틈사이를 내화 충전재로 채워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강제환기(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한시간에 1세제곱미터이상의 환기 능력을 가질것) 또는 자연환기(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6분의 1내지 16분의 1.5)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보기쉬운 곳에 변전설비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8. 변전설비가 있는 실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변전설비가 있는 실내는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0. 정격전류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필요에 따라 숙련자로 하여금 설비에 관한 각 부분의 점검 및 절연 저항등의 측정시험을 하게하여 불안전 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도로상에 설치하는 전기 사업자용의 것과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조를 갖는 큐비클식의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재료로 된 개구부가 없는 외벽과 마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발전설비) ① 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최대출력 20킬로와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방지 장치가 된 바닥 위 또는 받침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기통은 방화상 유효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3호의 나목중 버너를 내연기관으로 본다.

제12조(축전지설비) ① 옥내에 설치하는 축전지설비(정격용량과 전조수(電槽數)의 적(積)의 합계가 4,800Ah 셀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해액용기는 내산성의 바닥 또는 받침대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축전지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내지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내온관등 설비) ① 네온관등 설비의 위치, 구조,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점멸장치는 저압측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불연재료로 만든 덮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무접점계전기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압기를 옥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인출되는 부분이 하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지를 그밖의 네온관등의 근접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난연합판등 제외) 또는 합성수지(불연성 및 난연성제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은 벽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원의 개폐기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네온관등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 ①무대장치 또는 전시용 장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설비 또는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이하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라 한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무대장치 또는 전시용 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가. 전등은 가연물을 과열시킬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등의 충전부분은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전등 또는 배선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라. 방전이 발생하는 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 하나의 전선을 2이상의 분기회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가. 분전반, 전동기등은 비·눈·토사등의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설비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고 휴즈를 불이는등 자동차단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기준등

제15조(방전가공기) ① 방전가공기(가공액으로 소방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탱크내의 방전가공부분 이외의 가공액온도가 정해진 온도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액의 액면 높이가 방전가공 부분으로부터 액면까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구전극과 가공대상물과의 사이에 탄화생성물의 생성등 이상을 검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액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전가공기의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인 가공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공액을 피가공물에 분사하는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구전극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이상방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상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전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외에 방전가공기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제2호는 제외한다.

제16조(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연통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구를 건축물의 옥상에 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 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써 그 최소 넓이가 기구직경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구의 용적은 15세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측 또는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구의 계양각도가 지표면에 대하여 45도이하로 되는 강풍시에는 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소가스를 충전하거나 방출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통풍이 잘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 나. 조작하는 사람 이외에는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전기방식을 부설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기구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가 남아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수소가스의 용량이 90페센트이하로 줄었을 때에는 재충전하여야 한다.
7. 기구를 계양종이거나 매어 놓았을 때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많은 사람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운반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그리비야인쇄기, 고무스프레터, 기모기, 솜틀 기계 그밖의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 중기나 분진이 비산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벽,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 및 바닥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가연성의 중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있는 실내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화학실험등) 화학실험등에 있어서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물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인화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가열하는 물품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열원을 조절하여야 한다.
3. 실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인화성이 강하거나 충격등에 민감한 물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그밖에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등) ①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등에 의한 가열 작업
4. 리벳트작업

②가연성의 증기, 가스, 분진 또는 폭발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 분진의 제거, 화기의 제한, 소화용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 그밖의 화재예방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공정등 안전관리) ①산업시설의 공정에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침투·분무 및 분체도장 공정
2. 디핑 및 코팅공정
3. 분쇄·사출 및 성형공정
4. 용융·담금등 금속작업공정
5. 용제추출 및 식품제조공정
6. 농약제조공정 및 저장
7. 곡물 저장 및 냉장
8. 그밖의 화재발생 우려 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공정시설에 대하여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체 점검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절 화기사용에 관한 사항

제21조(흡연등) ① 다음 각호의 장소로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에 규정한 관람집회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2. "영" 별표1(특수장소)에 게기한 시장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3.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4.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것이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피해의 위험이 많은 장소

② 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객석의 전면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금연”, “화기엄금” 또는 “위험물품 반입금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색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는 소방대상물(동항 제3호에 게기하는 장소 제외)에 있어서는 각종마다 흡연장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수의 재털이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장소에 흡연, 불의 사용 또는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분화) ①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불장난, 모닥불, 물건의 소각(이하 “분화”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할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장난감용 연화) ① 장난감용의 폭죽·꽃불등(이하 “연화”라 한다)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장난감용 연화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방염처리된 것으로 피복되어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4절 화재위험 경보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제24조(화재위험 경보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화재에 관한 경보가 발령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 평야등에서 불의 사용
2. 연화의 사용
3. 옥외에서의 불장난
4.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
5. 불씨(담배꽁초 포함), 재등의 방치
6. 기타 화재예방상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의 사용

제3장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제1절 주택,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위험 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제25조(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①소방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상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은 충수압 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소에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택용 유류저장소"라는 명칭과 아래부분에 품명 및 최대저장량을 기재한 표지판 및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되 표지판의 크기는 각각 가로 0.4미터이상, 세로 0.2미터이상으로 한다.
4. 위험물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압력탱크 외의 저장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탱크의 개폐밸브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은 금속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저장탱크의 가까운 곳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옥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세대별 난방용 옥내탱크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1. 탱크 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기둥등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탱크 상호간에는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탱크 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 및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4.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용 위험물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험물 저장은 옥내탱크에 한하고 거실을 제외한 당해 세대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의 최대 저장량은 1,000리터이하로 하고 탱크 전용실은 다른 용도의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과 지붕으로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3. 탱크 전용실의 출입구는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방화문 및 0.2미터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저장 탱크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 탱크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00조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시설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저장 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3. 지하저장 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지하저장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탱크와 탱크실의 내벽과의 사이는 0.1미터이상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제26조(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10항과 같다.
- ②농예용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 한한다.
- ③위험물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 저장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150조(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소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이 조에서 "탱크"라 한다)는 압력탱크가 아니어야 한다.
4.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6.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통기관의 위쪽끝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가는 눈의 구리로 된 인화방지망을 씌워야 한다.
 - 다. 통기관의 위쪽 끝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어야 한다.
7.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유호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관은 강관 그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의 것으로 설치하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⑤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의 5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이상,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69조(옥내저장소 건축물의 구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

하는 것이외에 설치장소 및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27조(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제228조(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외에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는 이 조례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외에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 제176조, 제190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⑨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외에는 탱크의 위치매설배관, 탱크와 탱크실의 벽 및 탱크 상호간의 거리등은 제25조제4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대상은 공사장, 수출입 화물의 하역장소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2.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로 한다.
3.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소방시설기준규칙 별표16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시설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

터이상의 방화벽 또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주위에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50조(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②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설치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장 취급시설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정 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
제28조(공통기준)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량위험물취급소”라는 표지와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및 주의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열매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밖의 내열성을 가진 관을 사용하고 배관 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의 변질 또는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시킨후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2. 가연성의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티가 생기는 기계기구나 공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 중

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이외의 물품은 상호 근접하여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 또는 혼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옮겨쌓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기술기준규칙 별표16에 게기한 운반 용기와 수납 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겹쳐서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3미터(제4류 위험물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할 때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골고루 상승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옮겨쌓는 작업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9. 분무,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20.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염색 또는 세탁작업시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되게 하고 폐유는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2.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할 때에는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장소의 주위에는 폭 2미터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방화구조의 벽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마주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닥 주위에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당해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콘크리트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가장 낮은 부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가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높이 6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2.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가장 낮은 부분에 저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증기 또는 작은 가루의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당해 증기등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두께 2미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쉽게 파손 또는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면에는 쉽게 녹이 슬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통기관의 선단에 구리로 된 가는 망을 씌워 인화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탱크의 배관에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밀판을 바닥에 접하여 설치한 것에 있

어서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기술상 기준은 전조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지반면 밑에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마, 몰탈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에 의해 상부에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탱크는 당해 탱크에 직접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덮어야 한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배관은 당해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탱크 주위에는 당해 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관을 2개소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 품명(류)을 달리하는 2이상의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되는 위험물의 품명마다의 수량을 각각 지정수량 5분의 1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당해 장소는 지정수량 5분의 1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 ①영 별표3의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 지정수량미만(일반주택,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및 농기계용 유류취급장소 등은 제외)의 위험물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영 별표4에서 정한 수량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고필증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절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31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 별표4에서 정한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 화기 취급금지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특수가연물을 쌓아두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이하마다 구분하여 쌓고, 상호 1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하마다 구분해서 쌓을 수 있다.

제4장 피난 및 방화구획 관리

제1절 피난시설의 관리

제32조(공연장의 관람석) 공중이 관람 또는 청문하는 공연장(운동시설을 제외한다)에는 관람석 및 통로를 공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3조(유홍접객업소 등의 객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유홍접객업소와 대중음식점으로서 당해층 객실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객실 내에는 유효폭 1.5미터이상의 통로를 보유하여야 하며 가장 먼 객석에서 그 하나에 도달할 수 있는 객석수가 6이내 이어야 한다.

제34조(판매시설의 통로) ①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 받은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의 판매장내의 통로는 그 유효폭이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판매장에서 옥외로 통하는 직통계단(피난층에서는 옥외출구)에 이르는 유효폭 1.5미터의 피난통로를 1이상 설치하고, 판매장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유효폭 1.2미터이상의 보조피난통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35조(전시장의 피난통로) 전시장 내에 설치하는 통로는 그 유효폭이 1.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피난시설의 관리) 영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피난구, 복도, 계단, 피난통로등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상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난시설의 바닥면은 피난시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피난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문의 개방시에 복도, 계단등의 피난통로를 차단하거나 유효 폭이 좁아지지 않아야 한다.
4. 피난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열쇠잠금장치로 잠그어 두지말고 항상 피난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절 방화구획관리 및 적용의 준용

제37조(방화구획 관리) 영 별표1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의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방화문 및 방화샷타는 화재시 항상 자동폐쇄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폐쇄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방화문 및 방화샷타에 근접하여 연소의 매개가 되는 가연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파이프, 닥트등의 설비의 관통부 주위를 불연재료로 된 내화 충전재로 채워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닥트에 설치한 방화댐퍼는 방화구획 벽체에 고정설치하고 댐퍼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적으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의 준용) 체육관, 강당등이 시설을 일시적으로 공연장,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공연장의 관람석), 제35조(전시장의 피난통로), 제36조(피난시설의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9조(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해위등의 신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해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제5호 내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화(완구용 연화는 제외한다)의 취급 및 사용
3. 극장 이외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에 있어서의 연극, 영화, 그밖의 이와 유사한 집회의 개최
4. 수도의 단수 또는 감수

제40조(화재예방의 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 내지 제20조 및 제32조 내지 제35조에 관한 사항을 지도·권장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소방의 날 행사) ①소방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의식 및 부수되는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11월 9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42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43조(벌칙) ①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2조 내지 제14조,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제36조 내지 제39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군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소량위험 물동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